

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	2004. 6
제 출 자	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(주민등록법 제20조)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·공제 등에 가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- 주민등록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, 보험·공제 등에 가입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 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함.
-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200,000천원이상 가입토록 규정함.
-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함.

- 주민등록담당업무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,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대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토록 함.

3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- 2482(2004. 3. 26)호
「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」안

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00,000천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